



수의사법관련 유권해석내용 안내

「우리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지부에서 질의한 ‘공수의업무 중 재해발생시 국가의 보상여부’와 ‘축협 등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무면허자인 직원을 통해 조합원농가의 가축을 진료하는 행위의 수의사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자문변호사의 의견과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의) 축협 등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무면허자인 직원을 통해 조합원 농가의 가축을 진료하는 행위의 수의사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의 요지) 수의사법은 동물의 진료를 원칙적으로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사의 경우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하도록 하고 있음

수의법시행령 제12조에서 ‘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축산업과 관련하여 가축의 개량, 증식, 방역, 진료에 관한 것이 사업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수의사가 아닌 농협 직원의 동물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님.

농협이 수의사면허자와의 위탁, 계약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함. 이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 취지로 볼때 축협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수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우 수소의 불임수술 등 진료는 수의사법 제10조의 무면허진료에 해당됨.

2. (질의) 수의사법에의한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광견병예방접종등 국가방역업무 중 가축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권해석의 요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로 인한 부상, 질병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국가 보상이 이루어짐, 그러나 공수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동물의 진료업무와 관련하여 위촉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상은 인정되지 않음(광견병등 국가방역업무에 참여한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도 동일함) 또한, 국가배상의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수의의 상해나 질병감염이 다른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음 **대 수**